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1 선고 2022가단178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11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,479,451원 및 그 중 2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8. 5.부터,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4.부터 각 2022. 2. 28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태우

별지